

1. 개정이유

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·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, 인·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

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「해사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63호, 2021. 4. 13 일부개정, 2021. 10. 14. 시행)됨에 따라,

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접확인 세부절차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진단결과 확인절차 등 규정(안 제14조의2)

인·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7일 전에 확인목적, 일시 및 확인사항 등을 통보토록 함.

나.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 규정(안 제32조의2)

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보로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”를 “해상교통안전진단관리체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2제8항”을 “법 제18조의2제9항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4조의2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진단결과 확인절차 등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과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 등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기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처분기관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확인 근거 및 목적
2. 확인 일시
3. 확인자의 인적사항

4. 확인 사항

제32조의2(해양교통안전정보)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
2.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
3. 선박의 위치, 입출항에 관한 정보
4. 선박 점검·검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
5. 선박 운용 관련 지도·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
6. 선원의 면허, 교육 및 승·하선에 관한 정보
7.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
8. 해운·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(사업장을 말한다)에 관한 정보
9. 항로, 수로 및 항만 등 해양공간에 관한 정보
10. 해상교량, 방파제 등 해상시설에 관한 정보
11. 항로표지 등 항행안전시설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
12.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
13.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, 해상교통문자방송(NAVTEX) 등 항행안전지원에 관한 정보
14. 그 밖에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
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2(통합서식)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거나,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34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51조의2제6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사항을”을 “사항 및 지정·취소절차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별표13의2제1호가목의 “평가지수가 같은 종류의”를 “평가지수가 80점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의 “5명”을 각각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목 4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6)을 삭제하고 종전의 7)을 6)으로 하며, 제2호가목2)의 “7)”을 “6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1)부터 5)까지 외의 부분의 “3개월”을 “3개월 이내”로 하며, 같은 목 1)의 “4명”을 각각 “2명”으로 하고, 2)의 “여객이 4명 이하의 여객이”를 “4명 이하의 여객이”로 하며, 5)를 삭제한다.

4) 운영선박이 영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유류 또는 기름을 유출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하여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부터 제32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등) ① ~ ③ (생략)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제11조(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후단 삭제>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지원 등) ① (생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<u>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</u> 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	제12조(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상교통안전진단 관리체계</u> ----- -----.
제13조(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)	제13조(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)

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① ----- 법 제18조의2제9항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진단결과 확인절차 등)
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과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 등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기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처분기관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확인 근거 및 목적

2. 확인 일시

<신 설>

3. 확인자의 인적사항

4. 확인 사항

제32조의2(해양교통안전 정보) 법

제43조의2제1항에서 “해양수산
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
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
정보

2.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
관한 정보

3. 선박의 위치, 입출항에 관한
정보

4. 선박 점검·검사 및 심사에
관한 정보

5. 선박 운용 관련 지도·감독
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

6. 선원의 면허, 교육 및 승·하
선에 관한 정보

7.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
보

8. 해운·수산업을 경영하는 사
업자(사업장을 말한다)에 관
한 정보

9. 항로, 수로 및 항만 등 해양
공간에 관한 정보

제43조(증서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0. 해상교량, 방파제 등 해상시설에 관한 정보

11. 항로표지 등 항행안전시설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

12.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

13.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, 해상교통문자방송(NAVTEX) 등 항행안전지원에 관한 정보

14. 그 밖에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제43조(증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.

제44조의2(통합서식)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거나,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34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

제51조의2(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의 지정·취소 기준 등) ① ~ ⑤ (생략)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 된 자에 대한 지원 기준의 세부 적인 <u>사항</u>을 고시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<u>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.</u> 제51조의2(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의 지정·취소 기준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 제5항----- ----- ----- --- <u>사항 및 지정·취소절차</u> <u>등을</u> -----. ⑦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</u> <u>우수사업자 지정업무와 관련된</u> <u>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유</u> <u>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</u> <u>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</u> <u>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
---	---